

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03. 14(금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2. 28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2. 28

라. 상정일자 : 2014. 03. 14(제2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오병집 안전행정국장
- 검토보고 :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과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(대통령령, 2014. 1. 1. 시행)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
- 「지방공무원법」 에서 구분하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‘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’에서 ‘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’으로 축소·개정되었고,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던 별정직 공무원을 법령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2013. 12. 11.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이 제정된 바, 효용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홍성욱 위원>

-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없애는 이유는?
⇒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정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함.

○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는?

⇒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갖고 운영되도록 함.

○ 인천광역시 정원이 16명으로 감소,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면서 변화된 사항인가?

⇒ 정무부시장 등 일부만 별정직으로 운영, 나머지는 전문경력관 제도로 운영하면서 임용절차 간소화 하도록 하였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용범, 최용덕, 류수용, 이강호, 이상철, 홍성욱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